제322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 2 차 도 시 교 통 위 원 회

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9. .

도시교통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 제출되어 10월 7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「수도법」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,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

4. 참고사항

- 부서협의
  -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붙임
 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 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입법예고 결과
  - 예고기간 : 2026. 5. 28. ~ 6. 17.(20일)
  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「수도법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3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의 취지 및 위원회 구성·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❍ 특히 「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」에 따라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별도 조례에 근거한 독립 법정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벗어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지며, 위 조례에는 2026년 5월 전부 개정되어 부칙에 소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만 있을 뿐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금번 안건으로 제출되어 약 4개월 이상 조례의 부재를 불러온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.

붙임1 **관계법령**

□ 수도법

제30조(수돗물평가위원회)

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·상수도조합에 **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** [개정 2010.5.25, 2011.11.14, 2024.10.22] [[시행일 2025.4.23]]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[신설 2010.5.25, 2011.11.14, 2024.10.22] [[시행일 2025.4.23]]

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[신설 2010.5.25, 2011.11.14, 2024.10.22, 2025.10.1 제21065호(정부조직법)]

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개정 2010.5.25, 2024.10.22] [[시행일 2025.4.23]]

□ 수도법 시행령

제49조의3(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)

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수돗물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,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 [개정 2020.11.24]

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. [개정 2025.4.22] [[시행일 2025.4.23]]

[본조신설 2010.11.26.]

[본조개정 2020.9.29 제49조의2에서 이동]

붙임2 **예산 조치**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「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정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○ 제7조(수당) : 위원 회의 수당 지급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 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-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00,000원×12명×2회 = 2,400천원

4. 작성자

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장 김춘